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1-5호
2021. 1. 22.(금)

차 례

규 칙 (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07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08호) ... 4

고 시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7호) 10

공 고 (3)

- 비래동로 노상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2차)(공고 제2021-65호) · 11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77호) 16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실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78호) .. 17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1년 1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0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발간원칙) 금권 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제10조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관하는 입장권·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u>미연에</u>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 ----- ----- ----- ----- ----- <u>미리</u> ----- --.</p>
<p><u>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 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u></p> <p><u>② 발간은 대덕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u></p>	<p><u>제3조(발간원칙) 금권 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u></p>
<p>제10조 (매관대장) 금권을 매관하는 자는 매일의 매관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u>기장</u> 정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 (매관대장) ----- ----- ----- <u>기록</u> ----- -----.</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용하고 있는 규칙의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제3조).
-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용어로 개정함(제1조 및 제10조).
 - 미연(未然)에 → 미리, 기장(記帳) → 기록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1년 1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0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각각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사업자 등록 및 실제적 업종 형태가”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소매인의 수 :”를 “제1호 각 목의 장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법 제 16조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p> <p>가. ~ 마. (생 략)</p> <p>바. <u>사업자 등록 및 실제적 업종 형태가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u></p> <p>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p> <p>3. <u>지정소매인의 수</u>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p>	<p>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 ----- <u>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u>-----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u>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u> ----- -----.</p> <p>1. -- <u>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u>-----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u> ----- ----- -----</p> <p>2. -- <u>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u>----- -----.</p> <p>3. <u>제1호 각 목의 장소에는</u> --- ----- -----</p>

동일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별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고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한다.

<신 설>

-----.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그 기간은 10
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
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
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규칙의 조항 개정 및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매인 지정기준 등 개정된 법의 조문에 맞게 정비함(제3조).
-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내용을 사회변화에 맞게 정비함(제5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292-12	오정로109번길 12	2021. 1. 22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0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302-2	오정로77번길 62-14	2021. 1. 22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7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비래동 559-31	동서대로1754번길 23	2021. 1. 22	건물신축	동서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7,5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탄진동 123-28	대청로 32	2021. 1. 22	건물신축	대청댐의 명칭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비래동로 노상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2차)

「주차장법」 제8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비래동로 노상 공영주차장(비래프라자~금성백조2차 아파트)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2차)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참고사항

- 본 주차장은 전수탁자의 과다금액 응찰 및 영업실적 저조로 인하여 중도계약 포기한 물건입니다.
- 입찰대상 주차장의 주변상황 파악 및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익률을 확인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로 인하여 유료운영이 일정 기간 중단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료를 일할 정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대전광역시 노상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 위탁자는 시스템 및 노상 요금계산 단말기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수탁자는 단말기 통신요금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의 특성 상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월정기주차권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차장 현황 및 조건

주차장명	위 치	급지	면적 (m ²)	주차 면수	운영시간	최저입찰가격
비래동로 노상 공영 주차장	비래프라자 ~ 금성백조2차@	4	850	60면	09:00 ~ 20:00	금6,50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은 총수탁기간(2년중) 무료개방일(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수탁료임을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탁기간 : 2년 (2021. 2. 15. ~ 2023. 2. 14.)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 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제

3. 입찰참가자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법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구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 (<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온비드” 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21. 1. 22. 10:00 ~ 2021. 1. 29. 16:00	2021. 2. 1. 10:00	http://www.onbid.co.kr	대덕구청 입찰집행관 PC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 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취소는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기간 내에 우리구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취소 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다시 입찰 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7. 낙찰자의 결정방법

-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1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주민등록등본(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사본) 1부.
-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가입증명서) 1부. / 계약 후 위탁사용 개시 전 제출
- 제출기한 : 2021. 2. 5.(금) 16:00까지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10. 관리계약 체결

가.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 낙찰자의 제출서류를 지정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함

나. 계약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포기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로 귀속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21년 2월 5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수탁료 납부 : 계약 체결시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료(=낙찰금액)는 선납 또는 분기별 분할 납부(매분기 개시전월 납부통보에 의거 납부 / 분할납부시 연 1.00%의 이자납부)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주요 위탁조건(운영기간, 유료운영시간, 주차요금등)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 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 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주차요금 및 주차장관리자 실명표시제 실시 등 수탁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는 조건부 선정이오니, **공고문 및 계약서(안)** 등을 숙지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입찰 참가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입찰시 입찰조건 및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와 입찰금 გადა 제출로 인한 적자발생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문의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1588-5321)
- 계약,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93)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보증금납부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결과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끝.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건축주(행위자)의 확인이 불가능(신원미상)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처분내용 :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21. 1. 22. ~ 2021. 2. 16.(25일간)
3. 처분대상

소유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용	구조	위반면적 (㎡)	용도	비고
신원미상	신탄진동 119-14	무단증축	조립식판넬구조	30.1	창고	소유자불명

4. 송달내용

- 신탄진동 119-14번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시정명령 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하오니 2021. 2. 16.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한 내 미 시정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건축과(담당자 042-608-514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실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실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4항,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내용)	처분 내용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아이엔에스수산 주식회사	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118 (오정동)	영업소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 (2021.1.4.)

5. 공고기간 : 2021. 1. 22.(금) ~ 2. 8.(월)
6. 고지사항 : 위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등은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 ☎ 042-608-6963). 끝.